



# News Release

Connect with DOL at  
<http://social.dol.gov!>



U.S. Department of Labor  
Office of Public Affairs  
Washington, D.C.  
Release Number: 11-1614-NAT

For Immediate Release Dec. 8, 2011

Contact: Laura McGinnis  
Phone: 202-693-4653  
Email: [mcginnis.laura.k@dol.gov](mailto:mcginnis.laura.k@dol.gov)

Mike Trupo  
202-693-6588  
[trupo.michael2@dol.gov](mailto:trupo.michael2@dol.gov)

## 미국 노농부가 연방 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의 고용 목표를 기록적으로 설정하여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향상하도록 추진 계획

워싱턴 – 미국 노동부는 다른 필수조건과 함께 연방 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가 직원중 7%를 장애인을 고용하는 목표를 세우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 추진중에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 산하 연방 계약 준수 프로그램부(Office of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s)는 이 제안에 대한 일반시민의 의견 청취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 새 제안 규정은 연방 등록지(Federal Register) 12월 9일자에 발표될 예정이다.

OFCCP가 제안한 이 새 규정은 연방 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들이 자격있는 장애 고용인을 상대로 균등 고용 기회를 확실히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1973년 재활법 제 503항의 차별철폐조치(Affirmative Action) 조건을 강화하게 된다. 제안된 규정안 변경사항은 도급업자들이 직원 모집, 교육, 기록저장, 방침 배포에 대한 특정적 조치등 여성과 소수민족의 평등을 촉진하는 오랫동안 실시되어온 필수 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새로운 규정은 도급업자들이 새로운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하는지에 대한 특정 지침안을 제공하여 OFCCP의 도급업자에 대한 기대사항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제안된 규정은 미국 장애인법의 통과후 장애인 고용인들의 민권 보호를 크게 향상시킨 계기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힐다 L. 솔리스 노동부 장관은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장애인들에 대한 헌신적 노력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제안된 새 규정은 연방 도급업자들이 자격있는 장애 고용인들을 고용하는 법적 책임의 준수를 더욱 확실히 돕게 될 것입니다.”

제 503항 규정은 수십년간 있어 왔지만, 현재 장애인의 실업율은 13 퍼센트로 정상인의 실업율보다 1.5 배가 더 높다. 더욱 나쁜게는 지난주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노동연령 장애인의 79.2 퍼센트가 노동인구 외에 있으며 이는 정상인의 30.5 퍼센트보다 크게 높아 심각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40년 가까이, 법은 단지 도급업자들이 장애 고용인들 채용하는데 있어서 “성실한” 노력을 하도록만 규정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해 이것은 실현성이 없는 규정이었습시다” 라고 OFCCP의 패트리샤 A. 슈 국장은 말했다. “새로 제안된 규정은 특정 목표를 확실히 설정하고, 실제적 책임을 요구하며 법 준수를 원하는 고용주에게 가장 정확한 지침서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측정된 것은 실행되어 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규정의 실행을 확실히 할 것입니다.”

- 다음 -

## 미국 노동부 언론보도 자료 - 2 페이지

장애 고용인의 7 퍼센트 고용 목표 설정은 도급업자들이 이들의 차별철폐조치의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결정 절차에 도움이 된다. 제안된 새 규정은 또한 책임성을 향상하기 위해 합리적 장애인 보조시설 신청의 기록과 처리를 포함해 자료 수집과 기록 저장 요구조건을 높히하게 된다. 이외에도, 고용주의 고용과 채용 홍보 노력에 대한 연례 자발 내부 검토를 확실히 실행하도록 하고 도급업자가 자격있는 신청자 풀을 높히도록 직원 모집을 홍보하도록 하는 새로운 요구조건도 추가한다.

제안된 규정 통지문을 읽거나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선 연방 제안 규정 인터넷 포털 <http://www.regulations.gov> 를 방문하면 된다. 의견은 또한 우편으로 다음 주소로 보내면 된다: Debra Carr, Office of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s, U.S. Department of Labor, Room C-3325, 200 Constitution Ave. NW, Washington, D.C. 20210. 모든 의견은 2012년 2월 7일까지 도착해야 하며 분류 번호 (RIN) 1250-AA02 를 포함해야 한다.

제 503 항 이외에도, OFCCP 는 행정 명령 11246 과 베트남 전쟁 당시 제정된 1974 년 재향군인의 재적응 협조법도 집행하고 있다. 수정된대로 이 세가지 법안은 연방 정부와 사업을 하는 도급업자, 하도급업자 모두가 차별철폐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따르고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장애 또는 보호받는 재향군인 상태를 바탕으로 고용차별을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반 정보는 OFCCP 의 무료 도움라인 전화번호인 800-397-6251 으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http://www.dol.gov/ofccp> 를 방문하면 된다.

###